

4 기획

투표율 50%에 멈춘 학생자치, 개표 요건 다시 물어야

투표율 미달 · 연장 투표 반복, 국내외 대학은 기준 완화 움직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우리학교 양캠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로 인한 연장 투표와 선거 무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과반수를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 현행 개표 요건이 현 시대에 합당한 기준인지, 그리고 개표 요건을 개편한 국내외 대학 사례를 살펴봤다.

‘과반’ 채우기 힘들어 자치 동력 잃는 대학 선거

지난 3월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는 양캠 모두 개표 요건인 투표율 50%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함께 진행됐던 국제캠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 역시 투표 기간을 3일 연장했음에도 투표율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가에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투표 기간 연장’ 공지는 학생 자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0%라는 수치가 개표 기준으로 자리 잡은 배경엔 민주주의의 ‘과반수’ 대원칙이 있다. 정치외교학과 임성호(정치외교학)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에서 50%라는 수치는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반수’의 대원칙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징성이 학생회 선거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가 변화한 투표 환경과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며 투표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는 매년 저조하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 참여도가 높았던 과거에 설정된 ‘투표율 50%’ 기준이 이제는 학생 자치의 정상 작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과반 기준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연장 투표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 수행의 지연을 초래한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올해 보궐선거 기간 연장 투표 당시를 회상하며 “당선이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50% 개표 요건 미달로 선거 무산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도의 유연성과 최소한의 정당성에 대한 대립이 이어진다

(사진=대학주보 DB)

받을 수 없어 집행부 구성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히 하루 이를 미뤄주는 것이어도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선거 무산은 학생회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선출직 단체장의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는 학생회 체제에 비해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자유전공학부 도유성(자유전공학 2026) 비대위장은 “비대위는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현 개표 기준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정찬(건축학 2025) 씨는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조건 투표율 50%를 채우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같다”고 말했다.

서준영(컴퓨터공학 2025) 씨는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선거 기간만 되면 매년 투표율 미달로 연장투표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봤다”며 “50%라는 숫자를 억지로 채우기 위

해 의미 없는 기한 연장을 거듭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행 과반수 개표 기준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보다 선거에 대한 피로감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표 기준 완화부터 폐지까지 현실적 대안 찾는 국내외 대학들

국내외 대학들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는 각각 2017년과 2000년대 후반, 개표 가능한 투표율 기준을 전체 정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33.3%로 변경했다.

당시 고대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려대 지속가능 자문위원회 정한을 위원은 유효 투표율을 설정하는 것은 학생회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대표성과 학생회 유지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반수라는 상징성에 얽매기 보다는 자치 기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 사회의 명맥을 잇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양대는 세척상 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적으로 개표해야 한다. 투표율이 개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북대 역시 지난 지난해 9월, 기존 50%였던 개표 요건을 45%로 완화했다.

해외 주요 대학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선거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대의성의 핵심으로 본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회(ASU) 선거는 총학생회장 선출 시 별도의 최소 투표율 정족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투표율이 10~20% 대라도 과정이 공정했다면 최다 득표자를 인정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회 역시 매우 낮은 정족수를 두거나 제한을 없애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당선 이후 자치 기구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 능력을 통해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유연성 vs 최소한의 정당성

이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생 자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학교 역시 새로운 기준 마

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교수는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50% 이상의 투표율을 강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는 개표를 위한 최소 투표율 요건이 없으며, 단체장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조차 33%를 기준으로 삼는다. 임 교수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역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일 수 있다”며 “50%라는 인위적인 마지노선에 얽매이기보다는 선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50%’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과 그 무게를 고려할 때 선부른 개표 요건 조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외교학과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50%는 구성원의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하고 선출된 대표가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가 먼저 취업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고 그 효능감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